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1/9

행동강령

제 정 2023 년 09 월 01 일

넥스콘테크놀러지(주)

제 · 개 정 현 황						
개정번호	일 자	내 용	작 성	검 토	검토	승 인
1	2023.09.01.	제정	전가희		송동섭	윤준열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3/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행동강령은 넥스콘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직원의 자세)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관련된 법규, 회사 정책과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며 본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제 2 장 노동인권

제 3 조 (기본이념)

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는다.

제 4 조 (강제근로 금지)

- 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채용 협력업체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한다.

제 5 조 (미성년 근로자 보호)

아동 근로자의 고용은 금지한다. "아동"은 15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한다. 또한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4/9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단,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 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는 제외한다.

제 6 조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매 7 일마다 최소한 1 일의 휴일을 보장한다.

제 7 조 (임금)

- 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③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제공한다.

제 8 조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차별 금지)

- ① 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②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는다.
- ③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 10 조 (결사의 자유)

회사는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5/9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제 11 조 (산업 안전)

- ① 안전 위험(화학물질, 감전,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는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 안전한 작업 절차 구축을 통해 파악, 통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받는다. 위험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 ②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하며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제거 또는 줄이는 등 등 합리적인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를 확보한다.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제 13 조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의 산업 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한다.

제 14 조 (유해인자 노출 저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통제하여 유해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6/9

제 15 조 (신체부담 업무)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 등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통제한다.

제 16 조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보호 장치, 연동 장치, 방벽을 제공하고 유지한다.

제 17 조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

- ①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②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과 함께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한다.

제 18 조 (안전보건 교육)

-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한다.
- ③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 3 장 환경보호

제 19 조(환경적 책임)

- ① 회사와 임직원은 환경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한다.
- ② 모든 사업활동 단계에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7/9

- ③ 회사는 환경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한다.
- ④ 회사는 청정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고 화학물질, 에너지, 수자원 사용을 저감하고자 노력한다.

제 20 조 (환경 인허가 취득)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제 21 조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 ①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최소화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 ② 천연 자원의 사용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자재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한다.

제 22 조 (유해물질 관리)

사람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은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 23 조 (고형 폐기물)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및 저감, 폐기, 재활용한다.

제 24 조 (대기오염 물질)

- 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 후 배출한다.
- ② 대기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 효율을 상시 관리한다.

제 25 조 (제품내 물질 규제 준수)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한다.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8/9

제 26 조 (수자원 관리)

- ① 불법 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 관거 유입을 방지하며 체계적으로 오염을 예방한다.
- ② 수자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며 오염 경로를 통제한다.
- ③ 모든 폐수는 배출 및 폐수처리 이전에 모니터링, 통제 및 처리한다.

제 27 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제 4 장 윤리경영

제 28 조 (청렴성)

- ①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유용, 횡령,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자산과 시설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④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제 29 조 (부당이득 금지)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 제안,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가를 허가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제 30 조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한다.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9/9

제 31 조 (지적재산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 내부의 지식 재산,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중요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며 관리한다.
-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지식 재산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회사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다.
- ④ 회사는 타인의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2 조 (공정거래)

- ①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경쟁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생산량, 입찰, 판매 지역, 판매 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공정한 거래 관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을 존중하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다.

제 33 조 (이해상충)

- ① 업무시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한다.
- ② 임직원은 재직 중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회사에 대한 경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34 조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회사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5 조 (책임있는 물자관리)

- ① 회사는 분쟁지역 광물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회사는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분쟁지역 광물 사용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10/9

제 36 조 (개인정보 보호)

- ① 회사는 협력회사, 고객사,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된 지정 업무를 위해서만 수집·사용하고 해당 정보가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계약 등에 따라 관리한다.

	행동강령	제정일자	개정일자	Page
		2023.09.01		11/9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